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3.8.]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구, 사회적주택)은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주체(운영기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u>운영기관마다 내용이 상이</u>하므로 상세요건 등은 반드시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모집일정

모집공고	서류접수	자격심사	주택개방	입주자 발표	계약체결
25.3.8.~ 25.3.10.	25.3.8.~ 25.3.10.	25.3.11.~	개별안내	개별안내	개별안내

-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최종 입주자 및 선정결과는 SH 자격조회 통과통보 이후 발표합니다. (자격심사 이후 약 8주~)

Ⅱ. 공급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9 (양재동 361-5), 대명파크힐

공급대상 방개수		면적(m²)		임대조건(원)		모집호수	입주가능일	
<u> </u>	6/IIT	계	전용	공용	보증금	임대료	<u> 포입</u> 포구	HT/102
203호	방0	34.67	26.12	8.55	42,000,000	570,000	1호	25.04.21.

- ※ 청년 단독거주 (1인 가구, 동거 등 타인 거주불가)
- ※ 입주가능일 및 임대조건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층			수	지상5층 (엘리베이터 있음)
기	본	옵	션	하이라이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인터넷 및 IPTV (TV는 개별)
공	용	시	설	전자레인지, 건조기, 에어컨, 의자, 테이블, 책꽂이, 컴퓨터, 프린터기 등
관	2	!	비	50,000원 내외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공과금 별도

※ 주의사항

- 계약체결은 SH자격심사 완료 후 진행됩니다. (SH 자격심사는 8주 이상 소요)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은 전대차계약으로 시중은행 보증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은행에 개별적으로 문의바랍니다.
- 위 임대료와 보증금은 최저 금액으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 주택구조 확인방법

- 1. 홈페이지 : 한지붕.kr 주택둘러보기 해당주택 평면도 확인 가능
- 2. 유투브 : 검색창에 "한지붕협동조합" 검색

Ⅲ.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공통사항

- □ 해당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3.8.) 현재 미혼의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5.3.9.~2006.3.8.)를 말합니다.
- □ 기혼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 <u>무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세대구성원(하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참조) 모두 충족</u>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 가구는 운영기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단독거주(청년 1인 가구)일 수 있으니 공급주택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거주 유형은 세대구성원의 입주가 불가합니다.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 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 'VIII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 등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제외)·예비입주자· 상호전환·주거이동 등에 관한 내용은 각 운영기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u>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u>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직계존비속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2.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3.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신청자 본인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5.3.9.~2006.3.8.)
- ② 신청자 본인이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 소득 및 자산 기준

=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 준('23년)	1인	2인	3인	4인	5인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원)		6,024,703 (10% 가산금액)	7,626,973	8,578,088	9,031,048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 가구 기준소득에 1인당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총자산기액 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부채는 자산에서 감액)							
712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IV. 입주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Ⅲ.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구분	평가요소 및 항목		배점기준	
교육	한지붕 공동체 교육		20	
저라저 끊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	40	
정량적 평가	공동체 생활 관련 활동기간, 기타 가점	20	40	100
정성적 평가	주거, 공유경제, 공동체,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생각	20	40	
	친환경에 대한 생각, 공동체 참여의지, 자기소개서	20	40	

- 입주자 최종선정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주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항목 중 한지붕 공동체 교육은 유튜브 영상 시청으로 대체함.

V.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절차	일정	내용 및 공지	비고
모집공고	25.03.08~25.03.10.	홈페이지	
서류접수	25.03.08~25.03.10.	입주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10일까지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자격심사	25.03.11.~		서류, 자기소개서 평가
주택개방	개별안내	평가 후 고득점자 선발 (심사 후 약 2~3주 이후)	현 입주자와 일정조율
입주자 발표	개별안내	SH자격조회 발표 후 통보	심사 후 약 8주 소요
계약체결	개별안내	한지붕 본사에서 진행	① 제출한 서류 ② 계약금 (보증금 10%) 필수 지참

□ 신청방법

- 1. 입주신청서 작성 (첨부양식, 출력 후 서명필수)
- 2. 인터넷 입주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bXCn7JxkYqmcmyBp9)
- 3.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메일 (oneroof.coop.sh@gmail.com)로 송부
- 파일명 : 성명 (생년월일6자리) 서류명_양재 203
- 파일형식: pdf, png, jpg 택1 / 금융정보동의서는 tif 파일만 접수 (1mb 이하)
- 예시) 한지붕 (123123) 주민등록등본_양재 203.pdf
 - 1)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출력 후 서명필수)
 -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과거주소변동체크, 전입/변동일 모두 표기)
 -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4) 개인정보동의서 (첨부양식, 등본기준, 성명 정자체,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할 것, 태블릿으로 작성금지)
 - 5) 금융정보동의서 (첨부양식, 등본기준, 성명 정자체,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할 것, 태블릿으로 작성금지)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PDF로 발급받아 제출가능합니다. 열람용은 효력이 없음. ※
- 4. 원본 서류는 임대차계약 시 제출
- 5. 자동차등록증 상 본인명의 및 영업용 차량만 주차가능하며 주차 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6. 입주신청서 (서류), 인터넷 입주신청서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7. 인터넷 입주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 스캔본을 메일로 보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 발송 시 접수하지 않음.

한지붕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510호
	010-2881-1386
	oneroof.coop.sh@gmail.com
	한지붕.kr

VI. 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 'Ⅲ.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 액을 조회하여 검증합니다.
- 위 검증결과상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서명 <u>대상 전원이 각각</u>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16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VII.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3. 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u>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정자체) 서명</u>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반드시 모든 동의 란에 체크	제공 (붙임양식)
전원 제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u>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정자체) 서명</u>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제공 (붙임양식)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입주신청서	고 서명 후 제출, 임대차계약 시 원본 제출	제공 (붙임양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ㅁ 직계존속이 외국인 인 경우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해당자 제출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상 본인명의 및 영업용 차량만 가능, 임대차 계약 시 사본 제출 	주민센터

VⅢ.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시행 2024. 3. 25.])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 인정)** ※무주택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가액에는 포함, 산정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 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 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함)
 - ▶소명방법: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민원회신문(공문)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서류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단독, 다중, 다 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⑩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①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독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을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구	분	산정방법
*************************************	•		
*** *** *** *** *** *** *** **			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사업소독, (업업소독, 임업소독, 이업소독, 기타사업소독) • 재산소독 (업대소독, 이자소독, 연금소독) • 기타소독 (공적이전소독) • 기타소독 (공적이전소독) • 기타소독 (공적이전소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역 • 토지: 소유면적 × 개발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발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사고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조치법」제2조제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제지와 동일한 추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관취 대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간축보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간축보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절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경기적축 등 제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에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경기예금, 정기적급, 경기적축 등 저축성예금: 에금의 잔액 또는 충남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중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숙세 및 증여세법 시행경」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임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임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 드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역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역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사군구음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조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주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산화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건식, 수익증권,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숙세 및 증여세법 시행함」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차찬 * 차찬 - 『지방세법』제30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원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소늑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역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사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중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완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에급, 저축에급, 자유저축에급, 외화에급 등 요구볼에급: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청기예급, 정기적급, 정기적급, 중기처역 등 저축성예급: 예급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급, 출자자분, 부동산(연급)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료, 최무주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본장관이 정하는 가액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사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조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중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 *** *** *** *** *** *** *** ***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 '동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사균·구유·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조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간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간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주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차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 *** *** *** *** *** *** *** ***			
 반,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사고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때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축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에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체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부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산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급,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본혜계를, 자유자축예금,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통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산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자축예금, 장기저축 등 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전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에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전시,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숙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차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처럼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브	
 산 하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인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기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청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72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숙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다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숙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기타 자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숙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 ** ** ** **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자	_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지		자	
** *** ** ** ** ** ** ** ** ** ** ** **	-	동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된 환급금	│ 산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전액 또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기타 자사			
금융			
자산•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기타 자사•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금융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사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	
기타 자사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71-1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사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구	·분	산정방법
		•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9
		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부채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 불가)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기액 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	통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자동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가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기액을 기준의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렴

□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소득	근로 소 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기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4 7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 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 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 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총		선박·항공기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자산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 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그으저나 ㅈ치경기
	7	금융자산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	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 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IX.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	니다.	주자가 협의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내계약이 가능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최대 거주기간	임대치 원칙	·기간 예외(협의시)			
거주기간	10년	2년 단위	2년 미만 가능			
및 재계약		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u>재계</u> 을 주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약 시기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다.			
	•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행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주택 자산기준 충족이하 재계약 시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해	, , , , , , , , , , , , , , , , , , , ,			
임대조건 인상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운영기관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경우, 운영기 관과 입주자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증액은「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에 따라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인상 비율은 최대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호전환	보증금-월 임대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기본보증금 아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상호전환이율은 6.7%입니다.					
신청자격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주체의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방법·신청방법·제출서류 등이 다르오니,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기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소명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회결과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 처리 됩니다. 					

대출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계약 전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를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고, 해당 주택 운영기관에 대출가능 상품(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실 공동체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존재하고, 운영기관별 계획된 공동체 활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동체 활동의 운영 및 공동체 공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비용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비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거나 승강기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일 경우, 공용요금(공동전기료, 정화조 청소비 등) 외 추가로 관리비(일반관리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가 발생되며 그 비용은 입주자부담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은 기계식주차장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자선임 등에 대한비용이 세대 면적별로 배분되어 부과됩니다.(기계식주차장: 공급면적에 포함된 주택의 부속시설)
기타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입주자가 전대하는 경우)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제49조의8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4년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 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및 동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기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입주 후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체 질서(쓰레기 등 무단투기 금지, 고성방가 금지 등)를 준수하지 않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를 나눔카(카셰어링) 사업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X. 문의처

○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등 안내 : 한지붕협동조합 (010-2881-1386)

2025. 3. 8.

한지붕협동조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 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 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한지붕협동조합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 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1. 1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V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V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abla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V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u>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u> <u>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u>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 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 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 의하지 않습니다.
- 가. <u>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 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u>

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수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한지붕협동조합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기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 번호, 지로번호
한지붕협동조합	주택 소득 및 지산 등 입주 선정 관련 자격 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입주자격 검증결과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 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한지붕협동조합이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 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 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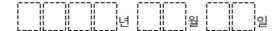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제공을 동의함 ¹⁾ 통보하지 않는 것에 (서명 또는 인)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 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신규]

1. 등본 기준 전입 세대원으로 작성

계존속, 비속 모두 작성, 형제자매 제외 '동의'체크

모든항목에

3. 날짜 기입

· 저장 시 유의사항

1. 파일명 : 성명 [생년월일6자리]_서류명_주택명 호실 2. 파일영식 : jpg. png, pdf (택1)

3. 예시 : 한지붕 [123123] 개인정보통의서 양재 101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 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한지붕	123123-1221005	본인	한지붕		(#C)		(시명 또는 안)
	*		(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 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저리하는 것에 대하여 등을입합니다. □통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운영기관명(전체명)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자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영우자 관리, 임대주택 증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 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 다 수진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박처셔(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독	Ø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공적연공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적불금내역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사업자동독사항			
자산	V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Ø	- 「국민기조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를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재]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중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 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필수] 본만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만의 개 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응의합니다. □통 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 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

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 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 원 한지붕협동조합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체,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추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 1억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 번호, 지로번호		
운영기관명(전체명)	주택 소득 및 자산 등 입주 선정 관련 자격 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입주자격 검증결과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 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중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월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운영기관명(전체명)이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중한내를 받았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번, 제17조제2 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mark>중의합니다.</mark> □동의하지 않습니다.
-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사이해하였습니다.**

2024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귀하

_	■ 공공주틱	대특별법 시행규 그 오 저 b) 제공 동	[앞면
7.	1. 공공주	택 신청자 인격	and the second second second	(0)	8 1	- 6	_	H	3 .	세 등 등	471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한기	[]5	=			1.00	2	3 1	
	주 소	서울특별	시	등	2구	선유	로	146	5, 510	호 (등본주	
	2. 금융정.	보 등 제공 동	의자(신	청자	또는	신청기	자의	세대	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 의 사실을 동의자에? 함 ¹⁾ 통보하지 않는 것이 당의함 ²⁾ (서명 또는 인)	
	본인	한지붕	1	2	2	1	0	3 0	5 3 4	한지붕	한지붕
			ויייי	U	1 2	o '	1	1 2	0 4		L
2. 금융정보 본인을 제일 신청자와의 동의자 성명 아버지의 경 주민등록번의 금융정보 등	등록번호, 주 등 제공 동5 첫번째 란에 관계 : 본인 : 본인 우 부, 어머니 호, 휴대전화 의 제공을 동	소 필수 기입 기자 기 모, 할아버지 번호 기입 의항, 동의하기 것, 출력 후 통	[인]조 [않음	모두	정자체	베로 기	입	본인 하는 공한 정보	, 배우: 것에 동 사실을 등의 저	자, 신청자와 배 등의합니다. 을 동의자에게 통	입주자 선정에 필 우자의 직계존속・ 통보하지 않는 데에 레공 동의자 개인에
파일형식 : ti 예시 : 한지	유 <mark>의사항</mark> 명 (생년월일6 if 링 (123123)_	3자리) 서류명 금융정보동의	서_양자	1 101		W 20 2		- 다). 불칭 6개	: 뒷면	참조	
	1700 NASSAMMENSON					에 따	른 공	공주	택의 일	l주자 선정 지원	Ą
	V	. (1.13 <u>****</u> . (1.14***				И				일	
	금융기	관장·신용	상정보	.집중	571	관장	구	ō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 13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1. 발급 대상자 를 선택해 주세요.	
● 본인	
2.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자세하 ^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해 주세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WORLD P. ANSA, ENGRAPH WIND B. SERVICE PROC. NARWAYN 1985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전부 비공개 ○ 전부 공개 ○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5.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자세히 [□] 화면 열람	
? 증명서를 프린터로 직접 인쇄합니다.	
② 팝업 차단이 되어있는 경우 팝업 차단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기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③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 입주신청서

* 이메일 발송 시 반드시 작성해서 송부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지참필수

인적 사항							
지원유형 (_{필수)}	■ 청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신 청 인	휴대전화			이메일			
(필수)	주 소						
	자동차	□ 있음 □ 없음 반려동물 □ 있음 □ 없음					
신청 경로	신청 경로 □ SH □ SNS □ 한지붕협동조합 홈페이지 □ 부동산(앱) □ 지인 □ 기타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과거주소변동내역 체크, 전입/변동일 모두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전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변동일 모두 표기)	
입주가능일 (<mark>필수</mark>)							
신청시 안내 1. 홈페이지 : 한지붕.kr 접속 → 주택둘러보기 → 해당주택 평면도 확인 가능 2. 유튜브 : 검색창에 "한지붕협동조합" 검색							

신청 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9 (양재동 361-5) 대명파크힐							
고그중시	HF 게 스		면적(㎡)	임대조건(원)			
공급호실	방 개수	계 전용 공용		공용	보증금 임		임대료
203호	방0	34.67	26.12	8.55	42,000,000 570,000		
입주가능일 2025.4.21						025.4.21	

■ 입주자 선발 원칙 및 주의사항

- 1. 입주자 선정의 권한은 운영기관에 있으며, '자체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름.
- 2. SH의 기본 입주자격(서류)심사는 단순 입주가능 자격 보유 여부의 확인에만 활용.
- 3. 입주자 선정 최종 공지 후 계약기간 내에 입주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4. 입주희망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미선정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5. 입주자 선정은 입주신청자의 종합적인 정량, 정성적 평가를 검토해 운영기관이 결정함.
- 6. 입주자 최종선정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주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SH)와 임대인(한지붕협동조합)이 다르므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함.
- 8. 임대주택 입주신청 관련 제출서류의 미비여부를 안내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접수자 본인에게 있음.
- 9. <u>다음 쪽부터 기재하는 입주신청 사유 및 자기소개서는 입주자 선정시 정성평가에 반영되니 주의하여</u> 작성해주시기 바람.
- 10. 한지붕협동조합 다른 주택으로 대기 불가함. 추후 다른 공고문에 신청 시 기존에 신청한 주택은 무효가되며, 자격조회도 다시 접수해야 함.
- 공고문을 통해 모든 입주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위 사항에 대하여 잘 안내받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입주 기준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자는 SH 자격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이 해지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	동의 : 본인은	· 아래 사전	입주 설문(∥ 기재한	개인정보를
한지붕 협동조합이 수집,	이용하고 제-	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						
□ 비동의						

2025 년 월 일

성명: (인)

한지붕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 자기소개서

1. 본 청년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운영하는 SH공사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이 이웃으로 지내는 공간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경험했 던 공동체 활동, 공동체 생활, 공유경제 등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내가 거주해왔던 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 집에서 살면서 겪었던 좋았던 경험, 주거 불안 또는 갈등은 무엇이 있었나요? 본 청년주택이 자신의 주거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어떤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청년주택은 커뮤니티 하우스입니다. 살림회도 있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이들과의 다양한 교류 활동도 있을 것입니다. 나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생활규칙 등을 함께 정하고 지키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왜 커뮤니티 하우스에 입주하고자 하나요?

성명 :

(인)